

발간등록번호

11-1352000-001474-01

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업무편람

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업무편람

2015. 8

목 차



1.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 개요	5
가.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 도입 배경 및 의의	6
나.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업무처리	9
다.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	14
2.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기준	17
가.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기준	19
3. 질문과 답변	23

부 록

1.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 관련 법률	29
2.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21호, 2015.7.1.)	34

1

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 개요

가

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 도입 배경 및 의의

1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 도입 배경 및 의의

자격확인서 제도 도입 배경

-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,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이 제정(2011. 8. 4.), 시행(2012. 8. 5.) 되면서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및 배치에 대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
- 또한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시행령 제정(2012. 8. 3.), 시행(2012. 8. 5.)으로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이 제시되었고,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는 2016. 3. 1.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
 - 배치시기
 -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: 2016.3.1. 부터
 - 만 4세의 장애영유아 : 2017.3.1.부터
 - 만 3세의 장애영유아 : 2018.3.1.부터



- 특수교사
 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(유치원 과정)을 소지한 사람
-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
 -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사람
- 이에, 2016. 3. 1.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순차적인 배치를 앞두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를 도입하게 됨

자격확인서 제도의 의의

-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 도입을 통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성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장애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

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 관련조항

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제도

관련조항

-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 제22조(보육지원)
-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 부칙(제11009호, 2011.8.4.)
제3조(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)
-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 시행령 제5조(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)
-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 시행령 제6조(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)
-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 시행령 부칙 제2조(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)
-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 시행규칙 제12조(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), [별표3]

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

관련조항

- 「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21호, 2015.7.1.)



나

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업무처리

1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발급기관

발급기관 : (재)한국보육진흥원

-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과 자격확인서 발급·재발급에 관한 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¹⁾에서 수행
 - ☞ 관련 근거 : 「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21호, 2015.7.1.)

1)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(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)
<http://chrd.childcare.go.kr> ☎ 1661-5666

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발급

자격검정 일반원칙

-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은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며, 「장애아동복지 지원법」시행령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[별표3]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정
 - ☞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발급 관련 중요사항은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통해 결정

자격확인서 발급

-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「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」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격확인서 발급



▪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서식

제 - - 호

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
자격확인서

성 명 :

주민등록번호 :

사 진

위 사람은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」 제5조에 따라
위와 같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이 있음을
확인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.

년 월 일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
규칙 제12조에 의한 권한을 위임 위탁을 받음

(재)한국보육진흥원장

3 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 절차

신청 및 발급절차

-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(www.chrd.childcare.go.kr)에서 인터넷 신청
- 신청 시 수수료 납부(10,000원)
 - ※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에 따른 직무교육 이수자는 수수료 납부 제외
- 인터넷 신청 후 자격기준 별 제출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
- 자격증 신청 후 진행현황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(www.chrd.childcare.go.kr) 마이페이지에서 조회
 - ※ 제출서류 및 수수료는 '서류접수완료' 후 반환 불가



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절차

■ 인터넷 회원 가입 후 로그인

-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(<http://chrd.childcare.go.kr>)

■ 발급신청서 작성

- 자격종류 선택 (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)
- 학력 등 세부사항 입력
- 신청자 본인 사진파일 등록 (JPG, GIF)
 - 사진크기 : 3cm×4cm
 -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(등록된 사진으로 자격확인서 발급)
- 수수료 결제 (신청건 당 10,000원)
 - 신용카드, 실시간 계좌이체, 가상계좌 중 선택하여 납부
 - ※ 현금납부 불가, 가상계좌결제의 경우 반드시 개별로 부여되는 계좌번호로 기한 내 입금

■ 서류제출

- 발급신청서 출력
-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

■ 자격검정

- 구비서류를 통한 자격검정 (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)

■ 자격확인서 발급

- 자격 확인이 된 경우 자격확인서 제작 및 발송 (신청 시 등록한 주소지로 발송)

신
청
인

한
국
보
육
진
흥
원

- 서류 보내는 곳 :

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(04303)

다

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

☐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

자격기준	<p>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(「영유아보육법」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.</p> <p>1. 「영유아보육법」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</p> <p>2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²⁾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사람</p>
제출서류	<p>①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(인터넷 신청 후 출력) 및 사진(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)</p> <p>② 보육교사 2급(1급) 자격증 사본</p> <p>③ 성적증명서 원본</p> <p>※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의한 (전문)대학 등에서 시간제로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성적증명서 제출</p>

☐ 경과조치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제출서류

대상자	<p>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 시행(2012.8.5.) 당시 어린이집에서 “장애아담당 보육교사”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6.3.1.까지 직무교육과정(온라인교육 40시간, 집합교육 40시간)을 이수한 사람</p> <p>※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부칙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2조</p>
제출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(인터넷 신청 후 출력) 및 사진(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) ▪ 직무교육 이수증

2)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 :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방송대학 · 통신대학 ·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, 기술대학, 각종학교



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재발급을 위한 제출서류

신청사유	제출서류	
	공통	개별
분실	재발급신청서(인터넷 신청 후 출력) 사진(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)	-
훼손		훼손된 자격확인서
성명변경		성명변경 이전 자격확인서, 변경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초본
주민등록번호 변경		주민등록번호변경 이전 자격확인서, 변경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초본

2

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기준



가

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기준



자격검정 기준 적용

-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



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기준

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(「영유아보육법」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함

1. 「영유아보육법」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
2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³⁾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사람

●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

-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보육교사 2급(1급)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

3)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 :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방송대학 · 통신대학 ·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, 기술대학, 각종학교

-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사람
 - 「영유아보육법」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
 -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의한 전문대학, 대학등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거나
 -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의한 전문대학, 대학등에서 같은법 제36조에 따라 시간제로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, 같은법 제23조제1항 제5호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 (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)
 - ※ 「고등교육법」제2조 이외의 기관(「평생교육법」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등)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은 해당사항 없음

-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기준
 -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시행규칙 제12조 [별표3]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
 - 2012.8.4. 이전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은 8과목(16학점) 이상 이수
 - 2012.8.5. 이후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은 8과목(24학점) 이상 이수



편·입학 시기에 따른 특수교육 또는 재할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기준 적용 방법

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대학을 편입하거나 입학하여 특수교육 또는 재할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최종 학력의 편·입학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

※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시간제로 특수교육 또는 재할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교과목 최초 이수시점을 기준으로 적용

사 례

- ① '12. 8. 4. 이전에 A대학에 입학하여 특수교육 또는 재할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'12. 8. 5. 이후에 B대학에 편입하여 나머지 특수교육 또는 재할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
▶ 8과목 24학점
- ② '12. 8. 4. 이전에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시간제로 특수교육 또는 재할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'12. 8. 5. 이후 C대학에 편입 또는 입학하여 나머지 특수교육 또는 재할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▶ 8과목 24학점
- ③ '12. 8. 4. 이전에 D대학에 입학하여 특수교육 또는 재할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'12. 8. 5. 이후에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시간제로 나머지 특수교육 또는 재할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▶ 8과목 16학점

● 제출서류

- 사진(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) 및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(인터넷 신청 후 출력)
- 보육교사 2급(1급) 자격증 사본
- 성적증명서 원본
 - ※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의한 전문대학, 대학 등에서 시간제로 특수교육 또는 재할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성적증명서 제출



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

(장애아동복지지원법 부칙 제3조 및 시행령 부칙 제2조)

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시행 당시(2012.8.5.)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 및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10조에 따른 장애아담당 보육교사는 **2016.3.1.**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**직무교육**(온라인교육 40시간, 온라인교육 평가, 집합교육 40시간)을 이수하는 경우 각각 법 제22조3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

● 경과조치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

-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 시행(2012.8.5.) 당시 어린이집에서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10조에 따른 ‘장애아담당 보육교사’로 근무하여 2016.3.1.까지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

※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 시행(2012.8.5.) 당시 어린이집에서 ‘특수교사’로 근무하여 2016.3.1.까지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사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

● 제출서류

- 사진(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)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(인터넷 신청 후 출력)
- 직무교육 이수증

※ 법 시행 당시 어린이집에서 ‘특수교사’로 근무한 자가 경과조치 대상자로 직무교육을 이수하여 ‘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’ 발급 신청 시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

3

질문과 답변



Q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, 대학에서 시간제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을 이수했습니다.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에 해당하나요?

A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시간제로 교과목을 이수하고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교과목이 인정됩니다. 단, 「고등교육법」제2조 이외의 기관(「평생교육법」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등)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
Q 2011년에 대학을 입학하여 일부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습니다. 2015년에 다른 대학으로 편입하여 나머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있는데 교과목 이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A 2011년에 입학한 대학에서 일부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, 2012.8.5. 이후 대학에 편·입학한 경우 8과목 24학점 이상의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셔야 합니다.

Q 대학에서 이수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중 법령 교과목과 동일하지 않은 교과목이 있습니다. 동일 교과목으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?

A 법령상의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으로 이수하지 않은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.

※ 제출서류 : 학과장 발행 공문, 유사교과목확인서, 심의요청 교과목의 강의계획서

Q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한 경과조치에 따라 직무교육 80시간을 이수하였습니다.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?

A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(<http://chrd.childcare.go.kr>)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 신청 및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 이 때, 자격확인서 신청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Q 2013년부터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장애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계속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?

A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 시행(2012.8.5.)에 따라 2016.3.1.부터 순차적으로 만3세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동 법령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. (2016.3.1.부터: 만5세 이상, 2017.3.1.부터: 만4세, 2018.3.1.부터: 만3세)



부 록

1.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 관련 법률
2.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21호, 2015.7.1.)



1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 관련 법률

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

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 제22조(보육지원)
<p>③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보육지원과 원활한 취학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및 배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교원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.</p>
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 시행령 제6조(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)
<p>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영유아 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: 2016년 3월 1일부터 2. 만 4세의 장애영유아: 2017년 3월 1일부터 3. 만 3세의 장애영유아: 2018년 3월 1일부터

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

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 시행령 제5조(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)
<p>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의 자격 기준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(유치원 과정만 해당한다)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.</p> <p>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(「영유아보육법」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사람

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 시행규칙 제12조(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)

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」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"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"이란 별표 3과 같다.

[별표 3]

[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]

1. 2012년 8월 4일 이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
 가. 특수교육 및 재활 관련 기본 교과목 및 학점

기본 교과목	교육학개론, 실기교육방법론, 치료교육 실기, 특수교육학개론, (특수아)통합교육, 개별화 교육계획, 언어치료학개론, 영유아교수방법론, 특수아(장애아) 부모교육론, 특수아 행동지도, 정신지체아교육, 청각장애아교육, 정서장애아교육, 학습장애아교육, 지체부자유아교육, 언어발달장애, 자폐장애교육,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,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, 시각장애아교육, 장애아동보육론, 감각장애아교육, 특수교구교재 제작, 보육실습, 아동발달론
학점	8과목(16학점) 이상

나. 유사 교과목 인정 기준: 가목의 기본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한 교과목이더라도 다음의 유사 교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

기본 교과목	유사 교과목
특수교육학개론	재활 및 특수교육, 유아특수교육개론, 특수아동교육, 특수교육개론, 특수교육학, 유아특수교육학, 특수아동지도
(특수아)통합교육	장애영유아통합교육, 통합교육, 특수아 통합 및 보육 세미나
개별화 교육계획	개별화교육프로그램,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



기본 교과목	유사 교과목
언어치료학개론	언어지도 및 치료, 언어치료학, 언어치료 및 실습, 언어장애아교육
영유아교수방법론	장애영유아 교수법, 장애아동 보육론, 특수아동지도, 특수아동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, 특수교육공학
특수아(장애아) 부모교육론	부모교육 및 훈련, 부모교육과 가족치료, 특수아부모교육, 부모교육론
특수아 행동지도	아동관찰 및 행동연구, 행동수정, 학습이론과 행동수정, 장애아문제행동지도
정신지체아교육	정신지체교육, 정신지체아 교수방법 및 실습, 정신지체인 교육과 재활, 정신지체아 심리 및 교육, 특수아심리
청각장애아교육	언어청각장애아교육, 청각장애, 청각장애인교육과 재활, 청각장애교육, 청각장애아심리 및 교육
정서장애아교육	정서장애교육, 정서 및 행동장애아 교육, 정서학습장애아교육, 정서 및 사회부적응아 교육, 정서행동장애인 교육과 재활, 정서 및 행동장애아 심리 및 교육, 정신건강
학습장애아교육	정서학습장애아교육, 학습장애인 교육과 재활, 학습장애아 심리 및 교육, 경도장애아 교육
지체부자유아교육	지체아동교육, 지체부자유교육, 지체장애인 교육과 재활, 지체부자유아 심리 및 교육
언어발달장애	언어청각장애아교육, 언어지도, 언어지도 및 치료, 의사소통장애개론, 언어장애아교육
자폐장애교육	자폐스펙트럼장애 교육
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	재활상담, 장애가족상담, 가족복지 및 치료, 특수아 상담, 가족상담
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	심리검사와 평가, 심리 평가 및 진단, 장애 유아 진단평가, 장애진단 및 평가, 장애아 심리 및 검사, 장애진단과 평가, 특수아(장애아) 진단 및 평가
시각장애아교육	시각장애인 교육과 재활,
장애아동보육론	보육학 개론
감각장애아교육	감각장애아동교육
특수교구교재 제작	특수교구 및 교재개발, 특수교육공학, 재활공학
보육실습	전담보육 또는 통합어린이집 실습
아동발달론	인지발달, 언어발달, 운동발달, 적응행동 발달, 사회성 발달, 발달심리

2. 2012년 8월 5일 이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

가. 특수교육 및 재활 관련 기본 교과목 및 학점

기본 교과목	특수교육학개론, (특수아)통합교육, 개별화 교육계획, 언어치료학개론,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, 특수아(장애아)부모교육론, 특수아 행동지도, 정인지체아교육, 청각장애아교육, 정서장애아교육, 학습장애아교육, 지체부자유아교육, 언어발달장애, 자폐장애교육,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,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, 시각장애아교육, 장애아동보육론, 감각장애아교육, 특수교구교재제작, 장애아보육실습, 장애아보육교사론, 발달지체영유아 조기 개입
학점	8과목(24학점) 이상

나. 유사 교과목 인정 기준: 가목의 기본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한 교과목이더라도 다음의 유사 교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

기본 교과목	유사 교과목
특수교육학개론	재활 및 특수교육, 유아특수교육개론, 특수아동교육, 특수교육개론, 특수교육학, 유아특수교육학, 특수아동지도
(특수아)통합교육	장애영유아통합교육, 통합교육, 특수아 통합 및 보육 세미나
개별화 교육계획	개별화교육프로그램
언어치료학개론	언어지도 및 치료, 언어치료학, 언어치료 및 실습, 언어장애아교육
장애영유아교수 방법론	장애영유아 교수법, 장애아동 보육론, 특수아동지도, 특수아동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, 특수교육공학
특수아 행동지도	아동관찰 및 행동연구, 행동수정, 학습이론과 행동수정, 장애아문제행동지도
정인지체아교육	정인지체교육, 정인지체아교수방법 및 실습, 정인지체인 교육과 재활, 정인지체아심리 및 교육
청각장애아교육	언어청각장애아교육, 청각장애, 청각장애인교육과 재활, 청각장애교육, 청각장애아심리 및 교육



기본 교과목	유사 교과목
정서장애아교육	정서장애교육, 정서 및 행동장애아 교육, 정서학습장애아교육, 정서 및 사회부적응아 교육, 정서행동장애아 교육과 재활, 정서 및 행동장애아 심리 및 교육
학습장애아교육	정서학습장애아교육, 학습장애아 교육과 재활, 학습장애아 심리 및 교육, 경도장애아 교육
지체부자유아교육	지체아동교육, 지체부자유교육, 지체장애아 교육과 재활, 지체부자유아 심리 및 교육
언어발달장애	언어청각장애아교육, 언어지도 및 치료, 의사소통장애개론, 언어장애아교육
자폐장애교육	자폐스펙트럼장애 교육
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	재활상담, 장애가족상담, 특수아 상담, 가족상담
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	장애 유아 진단평가, 장애진단 및 평가, 장애아 심리 및 검사, 장애진단과 평가, 특수아(장애아) 진단 및 평가
시각장애아교육	시각장애아교육과 재활
장애아동보육론	장애아 보육과정 운영
감각장애아교육	감각장애아동교육
특수교구교재제작	특수교구 및 교재개발
장애아보육실습	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혹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실습

3. 교과목의 명칭이 제1호 및 제2호의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한 교과목이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교과목 내용이 동일한지를 심사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과목으로 본다.

4.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충족 여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.

※ 동일교과목 심의요청 시 학과장 발행 공문, 유사교과목확인서, 해당과목의 개설학기 강의계획서 제출

● 부칙

<p>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 부칙 제3조 (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)</p>
<p>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 및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10조에 따른 장애아담당 보육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제22조제4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</p>
<p>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 시행령 부칙 제2조 (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)</p>
<p>법률 제11009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의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 및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10조에 따른 장애아담당 보육교사는 2016년 3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80시간 이수한 경우 각각 법 제22조제3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</p>

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21호, 2015.7.1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2조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5조,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12조, 시행규칙 별표3 제3호 내지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관련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충족 여부 등을 심사(이하 “자격 검정”이라 한다)할 법인 또는 단체(이하 “자격검정기관”이라 한다)의 지정과 자격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격검정기관) 자격검정기관은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·단체로 한다.



제3조(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) 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은 영 제5조 및 규칙 제12조 별표3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.

제4조(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) 제3조에 따라 자격검정을 거쳐 자격이 인정된 경우 자격검정기관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(이하 “자격확인서”라 한다)를 발급하여야 한다.

제5조(제출서류) ①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자격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자격확인서 발급(재발급)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로 대신함)
2. 성적증명서 원본 1부
3. 유사교과목 확인서 1부(필요한 경우에 한함)
4.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1부
5. 사진(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) 1장

② 제1항에 따라 자격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확인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자격확인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격확인서 발급(재발급)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자격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자격확인서(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)
2. 사진(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) 1장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확인서 발급·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.

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사교과목 확인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.

제6조(자격심사 및 자격확인서 발급 과정) ①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인터넷으로 제출하며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제출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한다.

② 자격검정기관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접수되면 자격검정을 실시하여 14일 이내에 자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- ③ 자격검정기관은 자격 검정을 하는 경우, 기본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유사교과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규정」(이하 “운영규정”이라 한다) 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·운영·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.
- ⑤ 제2항에 따른 자격확인서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다.

제7조(발급 수수료) 법 제22조, 영 제5조 및 규칙 제12조에 따른 자격확인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.

제8조(수수료 납부) 자격확인서 발급 또는 재발급 수수료는 신청서 접수 시 실시간 계좌이체, 가상계좌, 신용카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수납한다.

제9조(재검토 기한) 보건복지부장관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2호 서식]

유사교과목 확인서

- 성 명 : _____
- 생년월일 : _____
- 학 번 : _____
- 전공학과명 : _____
- 유사교과목(명) 확인내역

법령 교과목	유사 교과목 명 (이수한 교과목 명) * 이수한 학기도 표기	유사교과목 인정 사유	비고

위 사람이 이수한 교과목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해 이수해야하는 법령 교과목에 해당됨을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○○○대학(교) ○○대학 ○○학과장 ○○○ (인)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]



[별지 제3호 서식]

제 - - 호

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

사 진

성 명 :
생 년 월 일 :

위 사람은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」 제5조에 따라
위와 같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이 있음을
확인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.

년 월 일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
제12조에 의한 권한을 위임 받음

자격검정기관장

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업무편람

2015년 8월 인쇄

2015년 8월 발행

발행처 :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

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

전화 : 044)202-3568

홈페이지 : <http://www.mw.go.kr>

인쇄처 : 오감커뮤니케이션 (T. 02-786-8898)

〈비매품〉

본 간행물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.

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.